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862
----------	------

2024. 06. 18.  
주택공간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7. 최재란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 5.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6. 18.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최재란 의원)

### 1. 제안이유

-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의 설계와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플랫폼임
- 이에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 가.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바.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 가. 제안경위

-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5월 27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현행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검토보고서 붙임2 및 붙임3 참고)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정책 및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이 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나. 데이터협동조합 현황

- 집행기관에 따르면, 서울시 내 협동조합<sup>1)</sup>은 총 4,195개(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이며, 조합원의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중인 협동조합은 1개 소(디지털정책관 확인결과) 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조합원은 총 2명이며 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전문성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내 협동조합 중 데이터 활용 협동조합 사례 >

구분	협동조합명	목적	주요사업	비고
일반 협동조합	한국대중예술댄서협동조합 <sup>2)</sup>	조합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댄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서 예술활동 증빙 DB 구축사업</li> <li>▶ 댄서 구인,구직 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li> <li>▶ 경연, 강연, 교육, 학술회 등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발전 사업</li> <li>▶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총 2명</li> <li>- 데이터구축 및 활용 관련 전문성 부재</li> </ul>

※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재각색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제1조 (목적)	·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육성을 지원
제2조 (정의)	· 데이터, 데이터협동조합, 조합원 등 용어 정의

- 1) **협동조합이란**, ①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 구매,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이며, ②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 ‘한국대중예술댄서 협동조합’은 성동구에 소재하며, 협동조합 인원은 총 2명임. 댄스관련 분야 종사자 간 상호 연결을 목적으로 구직·댄스콘텐츠 공유 등 데이터를 취합하여 DB화하려고 하였으나, 설립(2022.04.02.)이후 현재까지 데이터 관련 문제(조합원 2명, 데이터 관련 전문성 결여 등)로 인하여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주요 내용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함을 규정
제4조 (시장의 책무)	·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 교육과 홍보를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 데이터 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 보호 방안,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 규정
제6조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
제7조 (교육훈련 지원)	·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가능 규정
제8조 (홍보)	·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지원가능한 사항 규정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제10조 (시행규칙)	·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 근거 명시
부칙	· 시행일(공포 즉시 시행)

##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데이터”, “데이터협동조합”, “조합원” 등에 대해 정의하면서, 일부 관련 법률<sup>3)</sup>을 인용하였음.
  - 안 제2조제1호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를 인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데이터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의 범주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조합법) 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p> <p>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제정안과 같음)</p> <p>1. ----- ----- <b>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b></p> <p>2. ----- 「<b>협동조합 기본법</b>」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것을 말한다.</p> <p>3. (제정안과 같음)</p>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제2항은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이 제정조례안 이외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이 제정조례안에 부합토록 하고 있는데,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이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b> ①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p>	<p><b>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b> (제정안과 같음)</p> <p>&lt;삭 제&gt;</p>

(4)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데이터협동조합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시장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협동조합조례 제5조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계획(3년마다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검토보고서 붙임5 참고)
- 따라서,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계획수립 및 실행체계에 대한 현행 조례가 운용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게 될 경우 정책의 중복, 수립기간 상이 시 실행 과정에서 혼란 등이 우려되는바,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4조(시장의 책무)</b>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4조(시장의 책무)</b> (제정안과 같음)</p> <p>② -----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③ (제정안과 같음)</p>

- 참고로 집행기관(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 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협동조합 조례를 통해 이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으로부터 ‘협동조합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이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기술분야별로 무분별한 조례 제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sup>4)</sup>도 제출되었음.

#### (5)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항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여,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협동조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동의 절차’와 ‘투명한 공개’의 의무만 규정한 채,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조합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토록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유출 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최신 보안 기술’과 ‘데이터 보안<sup>5)</sup>을 위한 점검 시기’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

4)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시민 의견이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됨.(2024.6.6.)

5) 데이터 보안의 방법에는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있음

터협동조합의 책무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b>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u>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데이터협동조합은 <u>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b>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b>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u>----- -----</p> <p><b>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b></p> <p>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b>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p> <p>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③ -----<u>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u>-----</p>

## (6) 설립 및 운영 지원·교육훈련 지원·홍보(안 제6조~제8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에게 ▲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안 제6조) ▲ 교육훈련 지원(안 제7조) ▲ 홍보(안 제8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항), ▲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데이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마.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협동조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
-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수정함(안 제5조제3항)

####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62
----------	------------

제안일자 : 2024. 6. 18.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중복 및 사업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관련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며, 협동조합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
-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수정함(안 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을 “협동조합을”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로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u>따른</u> 데이터를 말한다.</p> <p>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u>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3. (생략)</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②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u></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 ----- ----- <u>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u> ----- --.</p> <p>2. -----이<u>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u> ----- ----- <u>협동조합을</u>-----.</p> <p>3. (제정안과 같음)</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lt;삭 제&gt;</u></p>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생략)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데이터 사용 목적
-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 다. 데이터 보관 기간
-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생략)

제8조(홍보) ① (생략)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  
-----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정안 제1항과 같음)

제8조(홍보) (제정안 제1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
2.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 법률,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3.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제8조(홍보)**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